

의안번호	2200795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4.08.06.
추 계 번호	24C129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억 1,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7,500만원(연평균 1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25조·제26조)	115	115	115	115	115	575	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장학금 지원)	○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과대학 등의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제1항) - 장학금의 지급시기·지급절차·지급방법 등 장학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8조 (보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에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함 －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함(제1항) ○ 지역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함(제2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4	안 제24조 (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 및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이 근무한 시·도 또는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25조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와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8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6조 (지역의료발전기금 운용심의회)	○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함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둠(제1항) ○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의료·보건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학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장학금 지원)		
3	안 제18조(보수 등)		
4	안 제2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5	안 제25조(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26조(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		

- (안 제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안 제6조·제18조·제24조) 제정안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역의사에게 보수 지급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지원 대상자 수와 범위,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어 현시점에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 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절차, 방법 등과 보수의 수준 등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24.02.01.)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계획을 밝힘
- 의대생의 장학금·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제정안의 지역의사제와 유사하지만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를 정부와 의사 간의 계약으로 진행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필수의사의 수 등의 세부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음¹⁾

[표 2]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구분	상세내용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 지원 →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 충분한 수입 + 定住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24.02.01.)

□ (안 제23조) 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컨설팅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량적·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1)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4월 2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하면서 지역필수의사제 논의는 연기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안 제25조) 및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안 제26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각 조문별로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제26조)
 - 제정안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비” 사업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관련 업무를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사례를 준용하여 직접 관리 및 운용하는 것으로 가정
 - － 2024년 기준 “기금관리비”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배정하였고 기금관리비는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일반 수용비,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비(회의실 대여료, 위촉위원 수당 등)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정원은 15명(당연직 7인, 위촉 9인)이며,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총 5회(대면 2회, 서면 3회) 개최되었음

- 추계 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억 1,500만원 등 추계기간 중 5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25조·제26조)	115	115	115	115	115	575	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